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진방향 정보 표기방법, 직진, 좌·우회전 금지표시 등 도로 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표에 주석 추가(별표 2, 4)

비도시지역의 도로, 도시지역의 도로, 고속국도, 도로명 안내표지의 각 규격 표에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 표지판 및 지주의 두께를 설명하는 주석 추가

나.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해제표지'의 글자규격 삭제(별표 2, 4)

- 다. 시(市) 지역 밖의 지명을 표시하는 녹색박스 도안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방향표지 내 관광지 한자 표기 도안 삭제(별표 3)
- 라. 공간이 협소하여 '방향표지(2방향)'을 좌우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상하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추가(별표 3)
- 마. 일반국도 이하의 도로에 설치되는 '터널표지'에도 터널 길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3)
- 바. 기존 좌측정렬이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방향 안내를 중앙정렬로 변경(별표 4)
- 사. 기존 미비하였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를 안내할 수 있는 도안 추가(별표 4)
- 아. 도로표지대장에 조명방식을 입력 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별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전화 : 044-201-3911 / 팩스 : 044-201-5591